

대구지방법원 2018. 7. 27 선고 2017가단126146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이케이산업

피 고 A

변론 종결 2018. 7. 13

판결 선고 2018. 7. 27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. 9. 14.자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주 장

가. 원고는 대구 남구 B 대 4, 038. 3m(이하 ‘이 사건 대지’ 라 한다.)의 96. 88% 의 공유지분(1183.4921/1221.6)을 소유한 법인이고,피고는 이 사건 대지 지상에 건축된 상가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점포’ 라 한다.)의 소유자이다.

나. 원고는 2017년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를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,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은 그즈음 확정되었다.

다.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‘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
’고 규정하고 있다.

라. 따라서 원고는 위 법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(조정신청서)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7. 9. 14.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.

2. 판 단

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,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신종화

별지